

원장 채용 및 직무규정

제 정 2012. 09. 27.

개 정 2015. 05. 27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(사)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(이하 “융합원”라 한다) 원장의 채용,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관계법령 및 정관 또는 별도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융합원 원장의 채용,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2장 채용

제3조(원장추천위원회) ① 이사장은 융합원 원장 채용을 위하여 원장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원장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)를 구성한다.

② 원장의 연임은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추천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. 이때 이사장은 재임시의 공적, 연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한다.

제4조(채용절차) ① 원장 신규채용의 전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에 의한다. 다만,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부 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개최 후 복수의 원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.

③ 이사회에서는 원장추천위원에서 추천한 복수의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의 후 1인을 선임하며 이사장은 선임자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을 경우, 원장으로 임명한다.

제5조(구비서류) ① 원장으로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.

1. 응시원서
2. 자기소개서
3. 경력증명서(해당자)
4. 최종학력증명서

5.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 6. 면허, 자격증(해당자)
 7. 발표 논문 및 특허관련 서류
 8. 기타 필요한 서류
- ② 원장 채용예정자로 선임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.
1. 가족관계등록부
 2. 채용신체검사서
 3. 신원증명관련서류

제 3 장 직 무 및 보 수

제6조(임기 및 직무)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상근임원으로 융합원 대내외 업무 총괄
 2. 징수관, 경리관 등 예산 및 재무회계 총괄
 3. 운영위원회 위원장, 인적자원협의회 위원장,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, 비즈니스 솔루션자문단 위원장, 인사위원회의 위원장
 4. 기타 이사장이 위임하는 사무 관장
- ② 원장은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다른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보수 및 수당) ① 원장의 연봉은 '별표 1'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책정한다.

② 원장의 수당 및 여비는 융합원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9조(복무) 융합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(성과평가) 원장의 성과평가에 대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(2012.09.27.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.

【별표 1】 표준연봉표

(단위 : 천원)

구분	하한액	상한액	비고
원장	85,000	110,000	